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89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27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주 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위법·부당하게 학교에서 내쫓고 있는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자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동구학원은 2012년과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동구학원은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구학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파면, 직위해제 등의 위법·부당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행태의 학교운영을 지속하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학교운영 정상화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고취를 위해 동구학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립학교법」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 비정상적 사학 운영의 전형

○ 동구학원은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장, 교장, 이사 등의 직위를 독점해 온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며 그동안 폐쇄적인 사학운영에 따른 각종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 이러한 동구학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감독관청의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원의 비리를 제보 한 교사를 색출하여 지난 2014년 8월경 1차 파면하였다.

이후 파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공익제보 교사가 복직하였지만, 동구학원은 2015년 1월경에 재차 파면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학원운영을 지속하였다.

○ 이후 지난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

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의 거부와 별개로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금년 3월경에는 직위해제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21일에는 종전의 직위해제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동구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법인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익제보 교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동구학원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끊임없이 부당한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위법을 저지른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징계 처분명령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교육의 책임 있는 대표로서 동구마케팅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7일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일동